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2013년 학교규칙 개정안	수정사유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부속기관운영지침 중, 홀트학교 규정 제45조【세칙제정】와 부칙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홀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홀트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표준안에 맞게 수정
<신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 표준안에 맞게 신설
<신설>	제3조(교육목표) 홀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기본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사람을 교육목표로 한다.	· 표준안에 맞게 신설
<신설>	제2장 명칭 및 위치	· 표준안에 맞게 신설
제2조(명칭 및 학제) (생략)	제4조(명칭 및 학제) (현행과 같음)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제3조(주소) (생략)	제5조(위치) (현행과 같음)	· 표준안에 맞게 수정, ‘조’ 변경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 위 ‘장’의 신설 등으로 ‘장’ 변경 · 표준안에 맞게 수정
제4조(수업연한) (생략)	제6조(수업연한) (현행과 같음)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제5조(학년·학기) ①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년도는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삭제>	제7조(학년)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 표준안에 맞게 띄어쓰기 수정
<신설>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는 매학년을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신설>	· 표준안에 맞게 구학칙 제5조를 수정하여 별도 조항으로 기재
제6조(휴업일 등)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법정공휴일 및 추석, 설날연휴 2. 여름·겨울방학 및 학년말 휴가, 개교기념일, 토요일휴업일, 학교장재량휴업일,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3. 그 밖의 휴업일은 제1·2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삭제> 4. 학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 수업일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휴업 일에는 현장체험학습을 권장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삭제> 5.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은 등교를 명할 수 있다.<삭제>	제9조(휴업일) ①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업일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 표준안에 맞게 수정
제3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위 '장'의 신설 등으로 '장' 변경 · 표준안에 맞게 수정
제7조(학급편성) ① (생략) ② (생략)	제10조(학급편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제8조(학생정원) (생략)	제11조(학생정원) (현행과 같음)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과정수료의 인정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과정수료·졸업	· 위 '장'의 신설 등으로 '장' 변경 · 표준안에 맞게 수정
제9조(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특수교육진흥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시달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제12조(교육과정 등) ①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장애의 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②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신설) ③「2011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적용대상 학생 중에 교과 학년·학기 집중이수에 따라 전입학생이 특정교과목의 미이수·중복이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전입생 미이수·중복이수 문제 해소계획에 의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3.3.23. 개정) · 2012-36 경기도교육청 고시 변경으로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근거 수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전공과 교육과정 근거 제시 ·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신설
<신설> <신설>		
<제12조 내용 이동 및 수정>	제13조(수업운영)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자매학교와 통합교육이나 협동교육을 실시하며, 학년 또는 과정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 현장(체험)학습을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 표준안에 맞게 수정 및 신설

	제6장 개별화교육 운영	· 구 학칙 제10조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편성
제10조 (개별화교육) ①특수교육대상자 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삭제> ②개별화교육계획은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 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단,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기 중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삭제> ③효율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삭제> ④ 생략	제14조(개별화교육 운영) ①개별화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②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시행을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을 포함하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신설>	제15조(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①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다. ②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③학교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은 180일 이상 확보한다. 2. 초·중·고등학교 및 전공과는 매 학년 <u>220일 이상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u> ② ~ ③ <신설>	제16조(수업일수) ①본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초·중·고등학교 및 전공과는 매 학년 <u>190일 이상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②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한다.(신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업일수로 인정한다.(신설) 1.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신설) 2.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유치원 및 학교에 통합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신설) 3. 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4조(현장실습이수기간 등)에 의해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4. 전공과 학생의 현장실습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산업 및 유관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3개월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추가 실시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신설>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반영 · 표준안에 맞게 수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신설>	제17조(출결처리) ①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전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제18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보호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통보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2조 (수업운영방법) 수업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삭제>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 학년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삭제> 2.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인현장 체험학습은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간 7일 이내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삭제> 3. 학교주관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교류체험학습은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른다.<삭제> 4.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한 학기, 전공과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기업체 및 유관기관의 현장실습 등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삭제>		· 표준안에 따라 제13조, 제15조로 이동하여 수정, 신설하여 배치하고 본 조항은 삭제
제13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삭제>		· 표준안에 맞추어 제13조에 기재

제14조(평가) ①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평가내용·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학생평가) ①개별화교육계획에 의거 하여 서술평가 형식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 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③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내용·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 경기도교 육청 학업성 적관리 시행 지침 개정
	제20조(수료 및 졸업) ①각 학년의 과정 수 료 또는 졸업을 인정 함에는 교육과정의 이 수와 출석일수를 산정하여 정한다. ②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 다. ③전공과 과정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입학 후 2년이 경과하면 수료한다. ④학교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 업장을 수여한다. ⑤학교장은 유치원, 전공과의 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료증을 수 여한다.	· 구학칙 제 21조 조항을 이동하여 표 준안에 맞게 수정
제5장 입학, 전학, 유예 등	제7장 입학·전학·유예 및 면제·휴학 및 복학·자퇴·재취학·재입학	· 위 '장' 의 신설 등 으로 '장' 변경 · 표준안에 맞게 수정

제15조(입학자격) 본교의 각 과정별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1조(입학) 본교의 각 과정별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정신지체를 주장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5조 반영 · 문장식으로 수정함
1. 유치원 과정 :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장애유아(정신지체아) 2. 초등학교 과정 : 만6세부터 만12세까지의 장애학생(정신지체아) 3. 중학교 과정 :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정신지체아),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고등학교 과정 : 중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정신지체아),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 전공과 과정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정신지체아),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6. 학령기가 지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취학<삭제> 가. 만6세가 초과한 아동에 대하여 동장에게 취학통지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해당 학교장은 연령과 학력을 감안하여 적정 학년에 취학시킬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제29조 2항)<삭제> 나. 학령기가 지난 의무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할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격을 없는 자가 정신지체학교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하다.<삭제>	①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결원 발생 시 예외로 한다.<신설> ②유치원·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령에 달하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자로 한다. ③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수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2.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④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2. 중학교를 졸업한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⑤전공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학교장이 선발한다. 1.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 표준안에 없으므로 삭제하고, 학령기가 지난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지침에 준하여 운영

제16조(취학 방법) ①본교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취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삭제> ②본교 취학은 고등학교 과정은 경기도제2특수교육운영위원회, 중학교 이하 과정은 경기도고양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배치를 받은 자로 한다.<삭제> ③학교장은 본교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 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삭제>	제22조(입학방법) ①본교의 입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전공과의 학생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수정
제17조(전학) ① (생략) ② (생략)	제23조 (전학) (현행과 같음)	
제18조(장기결석 학생처리) 장기결석 학생 처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삭제> 1. 장기결석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5조)에 준하여 처리한다.<삭제> 2. 의무교육 면제 또는 유예승인을 받지 않는 한 유급시키지 않는다.<삭제> 3.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결석일 경우,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되, 당해 학년도에 다시 출석할 경우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고, 당해 학년도를 경과할 경우에는 유급 조치한다.<삭제> 4.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적사항은 해당국의 근거서류 또는 입국증명서로 대신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부모의 확인서로 대신한다.<삭제> 5. 개인 및 가정 사정으로 출석일수 부족이 예상되는 학생은 방문교육, 통신교육, 체험학습, 순회교육, 학습과제물 등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삭제>		·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항별로 이동하여 수정하고 본 조항은 삭제함.

제19조(유예 및 휴학처리) 유예 또는 전공과 학생의 휴학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삭제>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학생이 유예 또는 전공과 학생이 휴학하려고 하는 때에는 의사진단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유예 또는 휴학을 청원하여야 한다.<삭제> 2.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3. 유예 또는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삭제>	제24조(유예 및 면제) ①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보호자의 신청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신설> ②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외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 조항의 이름 변경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5조(휴학 및 복학) ①전공과 과정에 한하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한다. ③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시의 해당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다.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전공과 학생에 대한 휴학 규정 마련
<신설>	제26조(자퇴) 전공과 과정에 한하여 그 사유를 갖추어 자퇴원을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전공과 학생에 대한 자퇴 규정 마련
<신설>	제27조(재취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을 결정할 수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0조(재취학 및 재입학) 재취학 및 재입학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삭제> 1. 유예 결정을 받은 자 또는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익일부터 재취학하게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이라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재취학할 수 있으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또는 학년인정평가위원회에서 학생의 연령, 신체조건, 과목이수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학년을 정할 수 있다.<삭제> 2.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이 대신한다.<삭제> 3. 전공과를 휴학한 자의 재입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익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이라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까지 휴학을 연기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삭제>	제28조(재입학) 전공과 과정에 한하여 본교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구 학칙 제20조 삭제하고 표준안에 맞게 수정 ·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전공과 학생에 대한 재입학 규정 마련
제21조 (수료 및 졸업) ①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삭제> ②유치원 과정의 수료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수업일수와 평상시 생활발달상황을 평가하여 정한다.<삭제>		· 제20조항으로 이동하고 수정함
제22조(자퇴) 전공과를 자퇴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삭제>		· 제26조항으로 이동하고 수정함

<신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표준안에 맞게 신설
<신설>	제29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본교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②본교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③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신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신설) ⑤제20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수여한다.<신설>	· 초·중등교육법 제27조 개정 (2012.03.21.)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개정 (2012.10.29.)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4148호 전부 개정, 2012.10.29) ·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정 (2013.02.26.)
<신설>	제30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조기진급·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②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신설)	·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정 (2013.02.26.)
제6장 수업료 등	제9장 비용의 징수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장’ 변경
제23조(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용도서대) ①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무상으로 한다.<삭제> 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한다.<삭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

제24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 와 같이 교육과정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한다. 단, 현장체험학습 시 소요되는 교사경비는 학교에서 출장비 또는 실비 처리한다. <u><삭제></u>	제31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①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등) 와 같이 교육과정 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 표준안에 맞게 수정
제7장 학생포상 및 체벌금지	제10장 학생포상 및 생활지도	· 위 '장'의 신설 등으로 '장' 변경
<u><신설></u>	제32조(학교생활규정)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② 학생 생활지도는 홀트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 표준안에 맞게 신설
제25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학생,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33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자, 학업이 우수한 자, 발달상황이 우수한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수정 · 표준안에 맞게 수정하고 학생 특성에 맞게 수정
<u><신설></u>	제34조(훈육·훈계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표준안에 맞게 신설
제2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 추구를 위해서 각종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삭제>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삭제> ② 폭력을 가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삭제>		· 표준안에 없으므로 삭제
<u><신설></u>	제35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세부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표준안에 맞게 신설

<신설>	제36조(퇴학처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과 학생에 한하여 행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②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표준안에 맞게 신설
제8장 학생자치 활동의 목적 및 지원	제11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위 '장'의 신설 등으로 '장' 변경 · 표준안에 맞게 수정
제27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학생회를 자발적으로 조직·운영함으로써 애교심을 갖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참여와 자치활동의 경험을 갖게 하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데 있다. <신설>	제37조(학생자치활동) ①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홀트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신설)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수정 · 경기학생인권조례 19조 반영
제28조 (지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삭제>		· 표준안에 맞게 수정하여 제31조에 기록 · 본 항은 삭제
<신설>	제38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 표준안에 맞게 신설
<신설>	제39조(학부모회의 설치) ①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홀트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 경기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2013.2.27.)

제9장 보칙	제12장 보칙	· 위 '장'의 신설 등으로 '장' 변경
제29조(학칙 제·개정) ①학칙은 법인의 요청이 있거나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①학교장은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 표준안에 맞게 수정
제30조(기숙사 운영) ①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신설> ②기숙사 복무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기숙사 입사) ①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②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③기숙사 복무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위 조항의 신설 등으로 '조' 변경 · 표준안에 맞게 수정